#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39 발의연월일: 2020. 11. 04.

발 의 자 : 김희국 • 권명호 • 추경호

강기윤 • 이만희 • 김영식

하영제 · 김석기 · 구자근

김형동 · 김용판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·군사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현행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,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해당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.

그런데 별표에 규정된 사업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에 해당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재 별표에 규정된 사업을 사업인정 대상사업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구분하고, 사업인정 의제사업은 유효기간을 둠으로써, 토지등의 수용·사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별표).

법률 제 호

#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별표의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. [별표]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(제4조제8호 관련)

<u>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</u> (제4조제8호 관련)

- 1. 사업인정 대상사업
- (1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
- (2) 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
- (3)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
- (4) 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
- (5)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른 특화사업
- (6)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응급조치
- (7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측정망 설치
- (8)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·관리
- (9)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,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,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,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(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(10) 「석탄산업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 조성(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(11)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수목원 조성
- (12)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
- (13)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· 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·보수
- (14)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등의 설치
- (15)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
- (16) 「지하수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(국토

교통부장관,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) 설치

- (17)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·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·보수
- (18)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
- (19)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석유의 탐사·개발·비축 및 수송사업
- 2. 사업인정 의제사업
- (1) 「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」에 따른 특구개발사업
- (2)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
- (3)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
- (4) 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
- (5)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
- (6)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
- (7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조성
- (8)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- (9)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개발사업
- (10) 「관광진흥법」 제55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
- (11)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
- (12) 「광업법」 제70조 각 호와 제71조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광업권자나 조광 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행위
- (13)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
- (14)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
- (15) 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
- (16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(17)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
- (18)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 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

- (19)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
- (20)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
- (21)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 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
- (22)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
- (23) 「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- (24)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
- (25) 「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등활용사업
- (26)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댐건설사업
- (27)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공사
- (28)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(29)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
- (30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3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- (31)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
- (32)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청이전신도 시 개발사업
- (33) 「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 사업
- (34)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
- (35)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
- (36)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
- (37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- (38) 「사방사업법」에 따른 사방사업
- (39)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민간투자사업

- (40)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
- (41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
- (42)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새만금사업
- (43) 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
- (44) 「소하천정비법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
- (45) 「수도법」에 따른 수도사업
- (46)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
- (47)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
- (48) 「어촌・어항법」에 따른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
- (49) 「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어촌특화사업
- (50)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- (51)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특구개발사업
- (52) 「연안관리법」에 따른 연안정비사업
- (53)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
- (54) 「온천법」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·군수가 시 행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
- (55) 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에 따른 공원조성사업
- (56)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사업
- (57)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- (58)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(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(59) 「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
- (60)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저수지·댐의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정비계획의 수립, 정비사업
- (61) 「전원개발촉진법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
- (62)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

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

- (63)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개발 사업
- (64)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
- (65)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
- (66)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
- (67)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단지조성사업
- (68) 「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
- (69)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
- (70)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철도건설사업
- (71) 「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
- (72)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원조성사업
- (73)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- (74)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, 조사, 설치 및 토양정화(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(75)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
- (76)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
- (77)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공사
- (78)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 학교시설사업
- (79)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
- (80) 「한국가스공사법」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의 인수 ·저장·생산·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
- (81)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9조제1호・제2호・제4호・제5호・제5호의2・제7호부

터 제11호까지의 사업

- (82) 「한국환경공단법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업
- (83) 「항만공사법」 제8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3호부터 제8 호까지에 따른 사업
- (84)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
- (85)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
- (86)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사업
- (87)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실시하는 해저광물 탐사 또는 채취
- (88)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
- (89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